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김종복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종복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내 인성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성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안 제6조).
-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안 제6조).
-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미 우리 시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인성교육 범위 확대를 통하여 학교 내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하여 학교, 가정 및 사회의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김미영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등을 설치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모유수유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조례안은, 화성시 관내 양육환경 개선 및 임산부·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되며, 모유수유실 조성 지원 및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향후 예산 수반 계획에 대해 부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김미영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노인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사무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 활기차게 인생 제2막을 꾸려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되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향후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제9조(생산품 우선구매)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와 같은 인센티브(시군종합평가 우수평가 등)가 주어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조례 명시로는 우선 구매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 신설 등 예산이 수반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동시 시행 예정(‘24. 5.17.)에 따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되는 바, 우리 시 자치법규 중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문화재보호법) 인용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관계법 제·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 나. 기존의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
- 다.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으로 기관명 변경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정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 내 문화재 관련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시민들이 우리 시 자치법규와 현행법률과의 단어사용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향후 상위법 개정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안 제5조)

- 지원 기준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대상
- 현금 지급(금액,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화성시장이 정함)

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절차 및 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지급신청 신청 안내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조사 실시
- 지원 중지 환수 조치 사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전·현직 체육인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본소득 지급 기준에 대하여 매년 다양한 계층의 의견반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이 되도록 부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가. 제안이유

-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4. 8. 29. 만료됨에 따라 2024. 8. 30.부터 5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 개인별 적응훈련계획 수립
- 직무개발 및 일반 고용전이 ○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회수당 지원 ○ 재활기능 기초훈련 및 직업기초 기능훈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리 ○ 허그컵 카페사업 운영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동의안은,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8.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향후 5년간의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우리시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돕고 사회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부서에서는 우수한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등 장애인들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정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관련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와 관련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한국어, 기초학습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정착(자립,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다양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재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사업 진행 시 센터 소재지 근방의 이주청소년만이 아닌 우리 시 전체 이주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분소 설치 등 사업 진행을 통하여 이주청소년 또한 우리 시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대상인 봉담읍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나. 위탁시설현황

- (1) 위탁시설명: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 (2) 위 치: 화성시 봉담읍 내리 391-2
- (3) 시설연면적: 107.5076㎡

다. 위탁사무

- (1)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2)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3)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4)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5)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 내에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반적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측정 등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연계방안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대상인 봉담읍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나. 위탁시설현황

- (1) 위탁시설명: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 (2) 위 치: 화성시 봉담읍 내리 534
- (3) 시설연면적: 155.9906㎡

다. 위탁사무

- (1)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2)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3)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4)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5)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 내에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신규 택지지구인 내리지구 내에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가. 제안이유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나. 위탁시설현황

- (1) 위탁시설명: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 (2) 위 치: 화성시 수노을2로 150
- (3) 시설연면적: 181.5㎡

다. 위탁사무

- (1)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2)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3)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4)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5)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11.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연속적인 이음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변 학부모들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5년간 사업실적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위탁 시에는 운영상의 문제 또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위탁 및 운영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설치·운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정책 참여의 다양성과 전문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어학·자격 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 등 변경(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공동위원장(2인)을 위원장(1인)으로 변경하고 구성인원 확대

다. 청년 능력 등의 개발 변경 (안 제20조)

- 청년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어학·자격 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을 명확화하고,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시험 등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 맞는 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우리 시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수

강료 및 시험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비용추계서 상 예산 357,660천원)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5.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노인인구 및 치매유병률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추진 중임(`26년 1월 준공예정)
- 이에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의 관리 운영 위탁법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착공 단계부터 공정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반영을 통해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업무 전반
 - 노인의료복지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등
 -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의 자산 (설비, 비품 등)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함
- ※ 법인은 개원을 위한 정식 위탁기간 전 공정회의 등에 참석해야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명안)

- 본 동의안은, `26. 3. 개원 예정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26. 3. 개원 예정인 시설에 대하여 약 1년10개월 전에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조례 검토 결과, 동의안에 대해 상정 기간 제한은 없음
 -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시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또한, 예산추계상 추산된 예산이 2026년 설립 시에 달라질 수 있으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수탁법인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실버드림센터의 건립 시 의견개진을 할 경우, 민간위탁 종료 후 새로운 수탁법인 선정 시에, 타 법인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맡은 수탁법인보다 불리할 수 있음.

- 해당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면, 수탁자를 조기선정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 및 건립 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